

KCGS, 「감사위원회 모범기준」 및 「감사 모범기준」 제정·공표

- 한국기업지배구조원(원장 조명현, 이하 KCGS)은 기업지배구조, 사회책임경영, 환경경영 모범기준을 제정·관리하고 있으며, ESG 평가와 주주총회 의안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음
-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,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
- 이에 회계제도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다시 정립하고, 업무 및 회계 감사·감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(또는 감사)의 적극 대응이 필요
 - KCGS는 「감사위원회 모범기준」을 제정·공표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감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
 - 아울러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를 위하여 별도의 「감사 모범기준」도 함께 제정하여 공표함
- 모범기준 제정 추진경과
 -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 제정 및 세부매뉴얼·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(2017.9~12)
 - 국회 김용태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(2018.2)
 - 의견 수렴 : 모범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수정안 마련 (2018.3~4)
 -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, 금융감독원, 금융위원회 등에 의견요청 및 협의
 -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의결 (2018.5)

□ 제정 방향

- 감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“미래지향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최선 관행(Best Practices)”을 제시
- 감사위원회의 설치·구성부터 운영, 역할 및 책임, 의사소통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
 -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고려
 - 실무에서 실행 가능한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제시를 위해 노력
- 감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와 지속가능경영 성취 지향

□ 모범기준 주요 내용

○ 모범기준의 구성

<p>전문</p> <p>1. 내부감사기구 1) 감사위원회 2) 내부감사부서</p> <p>2. 구성, 선임 및 자격요건 1) 감사위원회 구성 2) 감사위원 선임과 종임 3) 감사위원의 자격요건</p>	<p>3. 감사위원회 운영 1)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2) 감사위원회 활동 3) 감사위원회 평가 4) 감사위원회 보수 5)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</p> <p>4.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1) 직무와 권한 2) 재무보고 3) 내부신고</p>	<p>4)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시스템 5) 내부감사부서</p> <p>5.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1)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2) 외부감사 실시단계 3)외부감사 종료단계</p> <p>6.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1)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2)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</p>
--	--	---

○ 전문

- 제정배경 및 목적 제시
 - 분식회계·부실감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회계정보의 질과 경영투명성 제고
- 모범기준의 적용 대상
 -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되 비상장기업에도 적용 권고, **규모·업종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가능**함을 선언

○ 내부감사기구

- 감사위원회 설치
 -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
 -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모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함 (현행 법률체계와 조화)
- 내부감사부서 설치
 -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
 -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임원급으로 함

○ 구성, 선임 및 자격요건

-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를 권고
-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포함
-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, 재무 관련 상당한 지식 보유 필요

○ 감사위원회 운영

- 충분한 회의 시간과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확보
 -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권고
-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에 대한 정기적 평가
- 감사위원의 투입시간과 노력,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 결정 및 지급

○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

-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 확보
 -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고려사항,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검토 등
- 내부신고시스템의 완비
 - 익명신고 방식 등 신고자 보호,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를 위한 조치 등
-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평가
 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, 리스크관리시스템 감독
- 독립성, 전문성과 충분한 인원이 확보된 내부감사부서 운영
 -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 보유
- 위원장은 주요 감사업무 등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주도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명시

○ 외부감사인과의 관계

- 외부감사인 선임 전 독립성과 전문성, 징계여부 등 고려
- **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권고(경영진 참석 배제)**
- 재무제표의 회사 직접 작성에 관한 점검
- 외부감사결과 검토, 외부감사의견 평가, 외부감사인 평가 등
 -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사항 관리, 점검

○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

- 이사회와 의사소통 원활하게 수행
- 주요 주주 및 주요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
 - 감사위원장의 주주총회 참석

□ 기타 향후 추진사항

○ 모범규준 책자 제공, 온라인 배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

- 자본시장 유관기관에서는 모범규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

○ 모범규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매뉴얼·체크리스트를 제공 (7월 예정)

- 모범규준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 및 유관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또는 설명회 개최

○ 향후 모범규준 및 세부 매뉴얼 개선에 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개정

-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는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노력 지속

붙임: 감사위원회 모범규준, 감사 모범규준 1부. 끝.

※ 담당부서 및 담당자 : 정책연구본부 정재규 선임연구위원 (02-6951-3842, jkjeong@cgs.or.kr)